

# 서울제물포터널 최초통행료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

의 안 번 호	2028
--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년 10월 16일  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

## 1. 제안이유

서울제물포터널 개통을 대비하여 「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」 제13조에 따라 최초통행료 결정을 위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징수대상시설

- 명 칭 : 서울제물포터널(가칭)
- 위 치 : 양천구 신월동~영등포구 여의도동
- 규 모 : 연장 7.53km, 왕복 4차로
- 개통일 : 2021.04.16.

### 나. 최초통행료 : 2,400원(단위 : 원/대, VAT포함)

- 소형차 전용도로
-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8조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에 따라 통행료 감면(붙임 참조)

### 다. 통행료의 산출기초

- 협약상 소형차 기준통행료에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누적 적용하여 산정(붙임 참조)

라. 징수기간 : 2021.4.16.부터 30년간

마. 통행료 징수방법 : 전자요금(ETCS)징수 및 영상인식 후불징수  
방식 혼용

바. 유사시설의 통행료 수준 : 붙임 참조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5조 및 동법  
시행령 제23조,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 
제13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백종임 (☎ 2133-8072)

## 최초통행료 산정 관련 자료

### 1. 최초통행료

#### 가. 최초통행료 산출근거

〈실시협약 제47조 최초통행료의 산정〉

① 최초통행료는 사업시행자가 추정통행료 수입에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개시 직전일 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 협의 결정

#### 나. 실시협약상 최초통행료

구 분	소형차 전용도로
실시협약 기준통행료	1,846원
기준통행료 수정	1,862원
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 적용	2,420원
최초통행료 적용	2,400원

#### - 적용 소비자물가지수

구 분	물가지수
2007년 2월말 소비자물가지수	81.189
2020년 8월말 소비자물가지수	105.500
누적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	129.94%

※ 2020년 8월까지의 실제 물가지수를 반영(근거 :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)

다. 최초통행료 산정

- 기존 통행료에 소비자 물가 변동분을 반영하여 산출된 금액을 실시협약 제47조 제5항에 따라 100원 단위에서 사사오입 방식으로 절상 또는 절하하여 최초통행료를 산정함

- 최초통행료 : 2,400원 (단위 : 원/대, VAT포함)

라. 소형차 구분

구 분	대 상	비고
승용 자동차	모든 규모의 승용자동차	
승합 자동차	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이고, 길이 4.7미터·너비 1.7미터·높이 2.0미터 이하	
화물 자동차	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이고, 총중량이 3.5톤 이하	
특수 자동차	총중량이 3.5톤 이하	

2. 통행료 면제 및 감면 대상

가. 실시협약 검토

실시협약 제48조(통행료 징수)②항 내용 :

사업시행자는 유료도로법에 의거하여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받으며, 『제15조 ②의 감면대상차량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8조,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.』

※ 적용 기준 시점 : 실시협약 체결(2014.05.09.)

(법 : 2014.01.14. 개정 / 시행령 : 2013.12.30. 개정 / 규칙 : 2013.03.23. 개정)

나. 면제 대상(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및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제3항제1호)

구 분	면제 대상
유료도로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군작전용 차량, 구급 및 구호차량,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</li> <li>○ 경찰작전용 차량, 교통단속용 차량 및 유료도로의 건설·유지관리용 차량</li> <li>○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세대원 소유 차량으로서 독립유공자가 승차한 비영업 차량 중 승용자동차,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,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</li> <li>○ 국가유공자(1~5급) 및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(1~5급) 또는 대상자의 세대원 소유 차량으로서 대상자 본인이 승차한 비영업용 차량중 2,000cc 이하 승용자동차, 7인승~10인승 승용자동차,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,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</li> <li>○ 천재지변 또는 과업 등으로 긴급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수송용 차량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차량</li> </ul>

다. 감면 대상(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제3항제2호)

구 분	감면 대상	감면율
경자동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배기량 1,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.6미터, 너비 1.6미터, 높이 2.0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, 승합자동차, 화물자동차, 특수자동차</li> <li>○ 길이 3.6미터, 너비 1.6미터, 높이 2.0미터 이하인 전기자동차, 수소전기자동차</li> </ul>	50%
장애인 차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등록된 장애인 또는 동일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비영업용 차량*</li> </ul>	50%
국가유공자 차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6급 또는 7급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또는 동일 세대원이 소유한 차량으로서 당해 국가유공자가 승차하는 비영업용 차량*</li> </ul>	50%
5·18 민주유공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6급 내지 14급의 신체장애등급을 받은 등록된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 또는 동일 세대원이 소유한 차량으로서 당해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승차하는 비영업용 차량*</li> </ul>	50%
고엽제 후유증환자 차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·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동일 세대원이 소유한 차량으로서 위 환자가 승차하는 비영업용 차량*</li> </ul>	50%
<p>*비영업용 차량(시행규칙 제5조제4항) : 2,000cc 이하 승용자동차, 7인승~10인승 승용자동차,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,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</p>		

라. 통행료 면제 및 감면 차량의 해당여부 증명

- 영 제8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5조제6항에 따라 식별표지 부착

3. 유사시설의 통행료 수준

관리청	시 설 명	연 장 (km)	통행요금
서울특별시	우면산터널	2.96	소형 : 2,500원
서울특별시	용마터널	3.57	소형 : 1,500원
서울특별시	강남순환도로	12.4	소형 : 3,400원(요금소당 1,700원)

※ 통행요금은 2020년 8월 31일 기